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6. 23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
3. 안건요지 : 따 로 불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불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환 구

대전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
대전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 되었고,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대덕구 평촌동 일원에 대해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을 수립하고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함.

【관련법규】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), 제6조 (주민 및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), 제7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k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개발제한 구역	대전광역시 관내 (대덕구 평촌동 일원)	310.097	감) 0.088	310.009	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 (km ²)	변경사유
변경	-	대전 대덕구 평촌동 일원	0.08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◦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

3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일원 등에 대하여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,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일원은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, 2020 대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이 일대 약 0.088 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금번 대상지는 지난 2007. 7. 31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의거 대전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,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.
-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와 공업용지, 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,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원은 전액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시행할 예정임.
- 금번 대상지를 포함한 상서·평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시 약 24만 제곱미터의 신규 산업용지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